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077

2025년 9월 12일
행 정 자 치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 출 일 : 2025년 8월 11일

다. 회 부 일 : 2025년 8월 14일

라. 상 정 일 :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9월 9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곽종빈 행정국장)

가. 제안이유

○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제24조 등에 따라 서울시청 직원 자녀의 육아 지원으로 영유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시설로서,

○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운영기관에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시설개요

○ 시 설 명 :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24번지

○ 시설규모 : 지하 1층 ~ 지상 4층(연면적 2017.72㎡)

○ 주요시설 : 보육실, 놀이터 등

○ 인 가 일 : ’95.3.6.(2000.3.3. 현 소재지로 확장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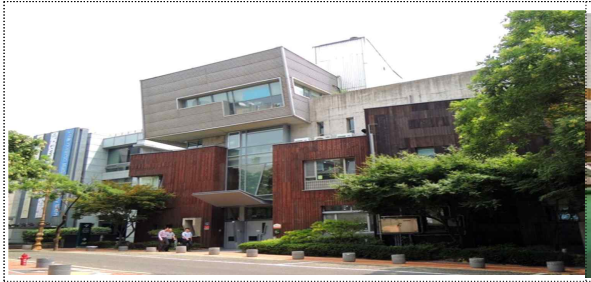

〈어린이집 전경〉

〈실외놀이터〉

2) 운영개요

○ 정·현원 : 정원 195명, 현원 146명(’25.7월 말 기준)

※ 3월 원아모집 기준 : 현원 150명

○ 교직원 : 총 45명

- 원장 1, 선임교사 1, 교사 33, 사무원 1, 간호사 1, 영양사 1, 조리사 4, 시설관리사 1, 보육도우미 2

○ 입학자격 : 만 0~만 5세 영유아 및 초등학생

3)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26.3.1. ~ ’29.2.28.)

○ 위탁업무

- 어린이집 운영전반(영유아 보육 및 초등학생 방과후반 운영)
- 시설·장비·부품의 구매 및 관리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의 수행

○ ’26년 예산(안) : 1,923백만원(보육료 수입 별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4)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99.01월~’01.07월(삼성복지재단 및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 2차 : ’01.08월~’08.10월(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 3차 : ’08.11월~’11.09월(학교법인 숙명학원)
- 4차 : ’11.10월~’14.09월(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 5차 : ’14.10월~’17.09월(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 6차 : ’17.10월~’20.09월(한솔어린이보육재단)
- 7차 : ’20.10월~’23.02월(한솔어린이보육재단)
- 8차 : ’23.03월~’26.02월(킨더슐레교육재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재위탁”이란 기존 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이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26년 예산편성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25.6.5.)

○ ’25년 제4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25.6.26.) 심의결과 : ‘적정’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2026년 2월 28일)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재위탁하고자 관련 법령(「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서울시 직장어린이집 현황 〉

○ 인 가 일 : ’95.3.6.(’00.3.3. 현 소재지로 확장 이전)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24번지
○ 면　　적 : 연면적 2,017.72㎡
○ 규　　모 : 지하 1층 ~ 지상 4층
○ 교 직 원 : 총 45명

(단위 : 명)

구분	계	원장	선임	교사	사무원	간호사	조리사	영양사	건물관리	보육도우미
인원	45	1	1	33	1	1	4	1	1	2

○ 모집정원 및 정·현원 : 정원 195명, 현원 146명('25.7.31.)

(단위 : 명)

구분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방과후
정원	195	15	25	31	30	29	28	37
현원	146	8	17	21	25	22	16	37

○ 운영방법 : 민간위탁

○ 수탁기관 : 킨더슐레교육재단

○ 수탁기간 : '23.3.1.~'26.2.28.

○ 위탁비용 : 1,768백만원('25년 기준)

○ 시설현황 : 연면적 2,017.72㎡(지하 1층 ~ 지상 4층)

층수	시설내역	면적
지하1층	조리실, 교사실, 영양사실, 비품실, 교재교구실, 소모품실, 휴게실, 기계실	501.86㎡
지상1층 (1.5층 포함)	0세 보육실 2개/ 1세 보육실 2개/ 2세 보육실 1개 / 영유아 화장실 2개 사무실, 보건실, 성인화장실, 실외놀이터	430.91㎡
지상2층	2세 보육실 1개/ 3세 보육실 2개/ 통합보육실 1개/ 영유아 화장실 2개 2.5층 하늘반 공용공간, 복도(영아신체, 도서공간), 상상놀이실, 성인화장실	442.91㎡
지상3층	4세 보육실 1개/ 5세 보육실 1개/ 영유아 화장실 1개 3.5층 지구_우주반 공용공간, 3.5층 영아옥외놀이터	333.85㎡
지상4층	초등 보육실 1개/ 실내놀이터(유희실)	308.19㎡

※ 출처: 행정국, 2025년 8월 14일 제출자료.

○ 직장어린이집은 서울특별시청(이하 "서울시청"이라 함) 직원 자녀의 육아 지원으로 영유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도모,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후생·복지시설로서 1995년 3월 인가를 받았으며, 1999년 1월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고 있음.

〈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현황 〉

구 분	수탁기관	수탁기간	선정방법	비고
최초위탁	삼성복지재단 및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공동 위탁	'99.1.1.~'01.7.31. (2년 7개월)	수의계약	
2차 위탁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01.8.1.~'08.10.31. (7년 3개월)	수의계약 및 재계약	
3차 위탁	학교법인 숙명학원	'08.11.1.~'11.9.30. (2년 11개월)	공개모집	

구 분	수탁기관	수탁기간	선정방법	비고
4차 위탁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11.10.1.~'14.9.30. (3년)	공개모집	
5차 위탁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14.10.1.~'17.9.30. (3년)	재계약	
6차 위탁	한솔어린이보육재단	'17.10.1.~'20.9.30. (3년)	공개모집	
7차 위탁	한솔어린이보육재단	'20.10.1.~'23.2.28. (2년 5개월)	재계약	<민간위탁금> - '21년 : 1,580백만원 - '22년 : 1,658백만원 - '23년 : 1,766백만원
8차 위탁	킨더슐레교육재단	'23.3.1.~'26.2.28. (3년)	공개모집	<민간위탁금> - '24년 : 1,768백만원 - '25년 : 1,768백만원

※ 출처: 행정국, 2025년 8월 14일 제출자료.

○ 현재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은 킨더슐레교육재단('23.3.1. ~ '26.2.28.)이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국은 재위탁 추진으로 경쟁을 통한 보육 지원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3년간('26.3.1. ~ '29.2.28.) 민간에 위탁할 계획이며, 올해 12월에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 개요 〉

o 위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3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호

o 위탁사무 :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 위탁사무 : 시청직장어린집 운영 전반, 시설・장비・비품의 구매 및 관리,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의 수행
- 관리재산 : 시청직장어린이집 건문연면적 2,017.72㎡, 옥외놀이시설, 위・수탁일 현재 장비 및 비품

o 위탁기간 : '26.3.1. ~ '29.2.28.(3년)

※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 지침

- 민간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다른 법령 조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름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조례 제6조

-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을 준용하여 5년으로 한다.

※ 2022년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조건부 적정

- 5년 위탁은 가능하나 수탁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 유도 등 이용고객을 위한 책무성 담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3년 위탁 후 중간 평가결과 등에 따라 2년 재계약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으로 조정필요

○ '26년 위탁예산(안) : 1,905백만원

- 계약심사 결과, 입찰참가업체 제안가격, 예산 심의결과에 의거 최종 결정

○ 선정방범 및 제안서 평가

시의회 동의	→	교직원 및 학부모 안내	→	모집공고	→	제안서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	→	협약심사 및 협약체결	→	신규위탁
'25.8~9월		'25.9월		'25.10월		'25.11~12월		'26.1~2월		'25.3월

※ 출처: 행정국, 2025년 8월 14일 제출자료 참조.

나.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

1) 직장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중에서 위탁보육을 받는 근로자 자녀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보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설치·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청사가 국유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청사의 주된 기능과 관련이 있는 기관)
2. 보육 수요가 가장 많은 기관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에 비례하여 각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비용 분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관리를 주관하는 기관과 이용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소속 공무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 환경 조성, 업무 효율성 및 심리적 안정감 증대, 사회적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2)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

○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여 비용 절감, 단순행정업무 신속처리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음.[1)]

○ 그러나, 민간위탁은 공공부문의 공공성 퇴색, 위탁기관의 통제력 감소, 서비스 품질의 점진적 하락, 투명성 부족, 사용료 인상 추진을 통한 이용자 부담 증가 등의 단점이 있으며, 최근 서울시의회에서도 민간위탁 사무의 방만한

1) 민간위탁의 추진은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상 행정조직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정부가 지향하는 규제개혁 측면 뿐만 아니라 행정의 고비용·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음(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실무편람』, 2003년 11월, 4면 참조).

운영, 서비스 품질 저하, 공공성의 악화, 책임 회피, 통제력 약화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음.[2)]

〈 민간위탁의 장 · 단점 〉

장 점	단 점
• 행정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 민간의 경험활용으로 전문성·기술성 제고 • 경영쇄신노력을 통한 공공서비스 질 제고 • 공익성·기업성의 조화로 행정능률 극대화	• 종합적.체계적 사업추진 및 기관간 협조체제 미흡 • 공익성(공공성) 퇴색 • 무분별한 수익사업 추진 및 적자 운영시 수수료(사용료) 인상 추진 등 주민부담 증가 • 장기 위탁시 사명감 부족, 프로그램 개발 저조 • 기계설비의 무리한 작동으로 사용 연한 단축 등 시설물 관리 부실화·노후화 촉진 • 노조 활동 등 서비스 중단시 주민불편 초래

※ 출처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실무편람』, 2003년 11월, 12면 재인용.

○ 행정국은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 운영 기관에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음.

○ 또한, 현재 직장어린이집 수탁사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A등급을 달성(〈붙임 1〉 참조)하였으나, 2024년말 기준 정부평가 참여 어린이집의 79.3%가 A등급이며, 현 수탁사의 운영지원 및 소통능력과 관련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의 미흡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수탁사의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으로 경쟁을 통한 보육 지원 서비스 품질 향상을 꾀하려는 것으로 보임.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연간 사업비 5억인 이상 사무는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어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로 종합성과평가를 대체하고 있음.

2) 서울특별시의회, 『민간위탁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25. 3. 5., 강상원, 토론 3, 41면 참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종합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은 가능하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바,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 대상의 보육사업으로 민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무이며, 서울시 소속 공무원 자녀를 보육하는 업무로 공공성을 요하는 사무가 아니므로,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체계적이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2025년 제4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25.6월)

부서명	위탁사무명	유 형		現수탁법인	위탁예정기간	심의결과
행정국 (인력개발과)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시설형	재위탁	킨더슐레교육재단	3년 이내 ('26.3.1.~'29.2.28.)	적정

※ 출처: 행정국, 2025년 8월 14일 제출자료.

○ 다만,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교직원 인식조사 등에서 수탁사의 적극적 소통 및 운영지원 노력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2025년 응답소 민원 8건은 현 수탁사의 위탁 적합성 재검토, 보육 교직원 고용 안정성 강화 등의 민원이 제기되었는바, 행정국은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교직원 지원 및 소통이 원활한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심사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선정이후에도 수탁업체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원활한 교직원 지원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최근 4년간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관련 민원내역 〉

연도	접수내역	조치결과
2022년	○ 포털 자유게시판(7.20.~7.21.) : 13건 - 재위탁시 고용승계 100% 요청 ○ 응답소(7.17.~8.10.) : 38건 - 고용승계 범위, 퇴지금 보전 등 관련 질의	○ '23년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문에 고용유지 및 승계(80% 이상) 의무가 발생함을 명시하여 공고하였고 원장 포함 희망하는 종사자 고용승계 실시
2025년	○ 응답소(5.1.~5.10.) : 8건 - 현 수탁사 위탁 적합성 재검토, 보육교직원 고용안정성 강화 ○ 기타민원(5.8.) : 1건 - 원장이 연임을 위해 부모와 교사들 동원, 재단 재위탁, 원장 재계약 여부는 담당부서의 권한임 ○ 포털 자유게시판(5.14.) : 1건 - 재계약 추진으로 인해 발생할 혼란 우려 ○ 국민청원(5.13.) : 1건 - 인력개발과 관리감독 소홀 및 수탁사 부적절 운영사례 조사 요구	○ 원칙적 대응인 재위탁 추진으로 경쟁을 통한 보육 지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 민원사항 조사 후 물품구매 및 인사관리 관련 법령 및 지침 위반 소지가 있는 운영사례에 대해 시정요구(재발방지 촉구 및 담당자 교육 등) 조치(6~7월) ○ 서울시, 교직원, 수탁사 간 소통 개선을 월 1회 통합간담회 개최 실시(8월~)

※ 출처: 행정국, 2025년 8월 14일 제출자료.

○ 다음으로, 최근 4년간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정·현원 현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정원은 195명이나 현원은 2022년 150명에서 2023년에는 132명으로 감소하였다가 2024년에는 153명으로 증가하였고, 2025년 7월에는 146명으로, 지난 4년간 정원 대비 현원은 75%로, 지속적으로 정원은 미달되고 있음에도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금은 지속적으로 증가('22년 편성액 16억5천 8백만원, '23년 17억3천7백만원, '24년 17억6천8백만원, '25년 17억6천8백만원)하고 있는바, 어린이집 이용 수요를 늘리기 위한 방안 마련 및 효율적인 운영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4년간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입소자 현황 〉

(단위 : 명)

구분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방과후
정원		195	15	25	31	30	29	28	37
'22년	현원	150	7	17	26	24	16	28	32
'23년	현원	132	4	9	23	19	19	21	37
'24년	현원	153	15	20	24	26	17	14	37
'25년	현원	146	8	17	21	25	22	16	37

* '22년~'24년 3월 원아모집 기준, '25년은 7.31.현재 기준

※ 출처: 행정국, 2025년 8월 14일 제출자료.

〈 최근 4년간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금 편성 및 집행현황 〉

(단위 : 원)

구 분	민간위탁금 편성액	집행액	집행잔액
2022년	1,658,009,000	1,599,021,092	58,987,908
2023년	1,737,102,000	1,726,311,936	10,790,064
2024년	1,768,183,000	1,712,131,752	56,051,248
2025년 7월까지	1,767,853,000	1,030,809,859	737,043,141

※ 출처: 행정국, 2025년 8월 14일 제출자료 참조.

○ 마지막으로, 최근 직장어린이집의 창호, 바닥, 외벽 등 노후화로 냉·난방, 환기 문제, 누수 등 보육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바,[3] 직장어린이집 시설 노후화는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쾌적한 보육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조속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3) 행정국,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추진계획", 2025.5. 참조.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077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제24조 등에 따라 서울시청 직원 자녀의 육아 지원으로 영유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시설로서,

나.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 운영기관에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 설 명 :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24번지

○ 시설규모 : 지하 1층 ~ 지상 4층(연면적 2017.72㎡)

○ 주요시설 : 보육실, 놀이터 등

○ 인 가 일 : ’95. 3. 6.(2000.3.3. 현 소재지로 확장 이전)

<어린이집 전경>

<실외놀이터>

나. 운영개요

○ 정·현원 : 정원 195명, 현원 146명('25. 7월 말 기준)

※ 3월 원아모집 기준 : 현원 150명

○ 교 직 원 : 총 45명

- 원장 1, 선임교사 1, 교사 33, 사무원 1, 간호사 1, 영양사 1, 조리사 4, 시설관리사 1, 보육도우미 2

○ 입학자격 : 만0~만5세 영유아 및 초등학생

다.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 ('26.3.1.~'29.2.28.)

○ 위탁업무

- 어린이집 운영전반(영유아 보육 및 초등학생 방과후반 운영)
- 시설·장비·부품의 구매 및 관리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의 수행

○ '26년 예산(안) : 1,923백만원(보육료 수입 별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라.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99.01월~'01.07월(삼성복지재단 및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 2차 : '01.08월~'08.10월(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 3차 : '08.11월~'11.09월(학교법인 숙명학원)
- 4차 : '11.10월~'14.09월(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 5차 : ’14.10월～’17.09월(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 6차 : ’17.10월～’20.09월(한솔어린이보육재단)
- 7차 : ’20.10월～’23.02월(한솔어린이보육재단)
- 8차 : ’23.03월～’26.02월(킨더슐레교육재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24조

>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조, 제4조의3, 제6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4. "재위탁"이란 기존 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26년 예산편성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25.6.5.)

○ ’25년 제4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25.6.26.) 심의결과 : ‘적정’

※ 작성자 : 행정국 인력개발과 김남철 (☎ 2133-5758)